

FIP-2012-0002(통권 제192호, 2012.07.16)

#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ISSUE  
PAPER



## Contents

### < 요약 >

I 검토배경 .....	1
II R&D 투자 현황 및 특징 .....	2
1. 국내 R&D 투자 현황 .....	2
2.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R&D 투자 비교 .....	4
III 국내 R&D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필요성 .....	7
IV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	11
1.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연장 .....	11
2.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R&D 부문 해당 기술 확대 .....	11
3. R&D 세액공제율 조정· 확대 .....	13
4. R&D 친화적 정책인프라 조성 .....	13
5.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기업 지원 확대 .....	14
V 결론 및 요약 .....	15
< 참고문헌 > .....	16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 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미래산업팀 현은경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6336-0642    FAX : 02-6234-5384    E-mail : christine@fki.or.kr



## I 검토배경

- 현 정부는 R&D 투자 확대 목표<sup>1)</sup>를 설정하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 전체 R&D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 조선·자동차·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은 불황기에도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했기 때문임
  - 특히 기초·원천기술 개발, 신성장동력과 같은 중장기적인 기술선도형 R&D 투자는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력은 물론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R&D 투자 환경 조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R&D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 국가 R&D 투자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전체 규모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 유인이 중요함
    - \*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R&D 투자 유인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
  - 기업 R&D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민으로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 \* 주요 OECD 국가들은 R&D 조세지원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면서 혜택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나타냄<sup>2)</sup>
- 산업계는 R&D 투자 확대가 조세지원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며, 지속적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세지원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R&D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대·중소기업의 R&D 투자 성과를 홍보하여 정부의 R&D 조세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1) 2012년까지 국가 전체 R&D 투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 방침

2) 전경련, 2011

## II R&D 투자 현황 및 특징

### 1. 국내 R&D 투자 현황

- 국내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GDP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3.74%(43.8조 원)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
- R&D 투자액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절대적인 규모나 누적투자액은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GDP대비 비중은 이스라엘 4.25%, 핀란드 3.84%에 이어 세계 3위이나, 금액은 미국 3,981.9억 달러(약 449.9조 원, '09), 일본 1,690.5억 달러(약 195.4조 원 '09), 독일 925.9억 달러(약 107.1조 원, '09), 중국 849.3억 달러(약 98.2조 원, '09)보다 낮은 379.3억 달러('10)를 기록하였음

< 연도별 국내 R&D 투자 현황 >

(단위 : 억 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R&D 투자액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전년비 증감률	8.9	13.2	14.5	10.2	9.9	15.6
GDP대비 R&D비중	2.79	3.01	3.21	3.36	3.56	3.74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10년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총 3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고, 국가 전체 R&D 투자의 74.8%를 점유
- 민간 기술개발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 R&D 투자가 국가 전체 R&D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기업 R&D 비중은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국가별 기업 R&D 투자 현황 >

(단위 : %)

구분	한국('10)	프랑스('08)	독일('08)	미국('08)	중국('09)	일본('09)
기업비중	74.8	61.9	67.5	72.6	73.2	75.8

자료 : OECD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4.2조 원(전년비 21.3% 증가), 중소기업은 8.6조 원(전년비 4.8% 증가)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국내 기업 R&D 투자 추이 >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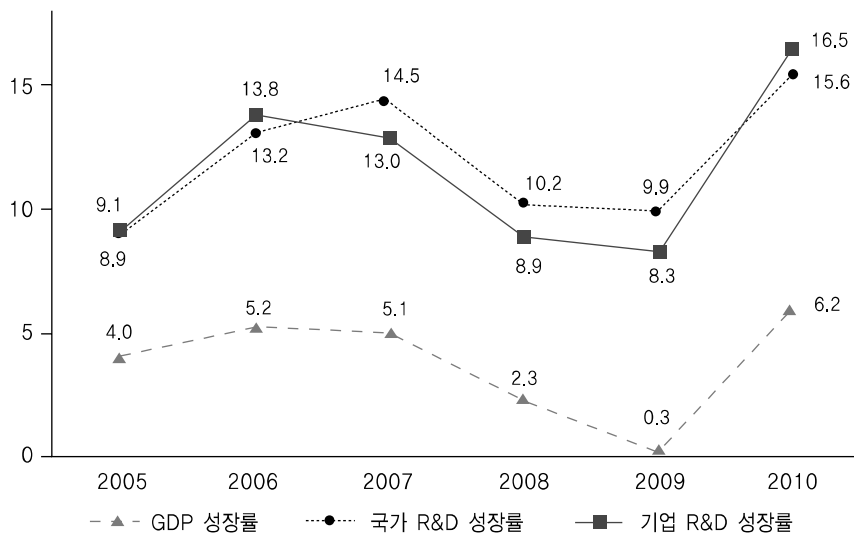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체 (증감률)	185,642 (9.1)	211,268 (13.8)	238,649 (13.0)	260,001 (8.9)	281,659 (8.3)	328,032 (16.5)
대기업 (증감률)	146,429 (8.8)	160,217 (9.4)	175,119 (9.3)	187,139 (6.9)	199,699 (6.7)	242,129 (21.2)
중소기업 (증감률)	39,213 (10.3)	51,051 (30.2)	63,530 (24.4)	72,862 (14.7)	81,960 (12.5)	85,903 (4.8)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연간 GDP 실질성장률과 R&D 투자금액 성장률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국가 경제발전과 R&D 투자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R&D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연간 GDP 및 R&D 성장률 추이 >

(단위 : %)



- 기업의 R&D 투자증가 효과는 연구 인력의 고용 확대로도 나타남

< 기업 R&D 전문 인력 수 변화 ('00~ 0년) >

구 분	2001	2010	'01~ 0 증가율
임금 근로자 수	13,659,000명	16,971,000명	24.2%
R&D 전문인력 수	111,299명	226,168명	103.2%

자료 : 통계청, NTIS

## &lt; 기업 R&amp;D 전문 인력 수와 투자액 변화 &gt;

구분		2001	2010	'01~ 0 증가율
R&D 투자액 (단위 : 억 원)	대기업	87,370	242,129	2.8배
	중소기업	35,366	85,903	2.4배
R&D 전문인력 수 (단위 : 명)	대기업	57,019	120,105	2.1배
	중소기업	54,280	106,063	2.0배

자료 : NTIS

- 매출액 기준 상위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전체 기업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민간 R&D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해외 IT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기업의 R&D 투자가 급증한 결과로 추정<sup>3)</sup>

## &lt; 매출액 상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gt;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상위 5대 기업	4.76	3.40	3.90
상위 10대 기업	3.28	2.70	3.32
상위 30대 기업	2.71	2.24	2.68
기업 전체	2.36	2.13	2.38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R&amp;D 투자 비교

- European Commission이 선정한 '10년 세계 R&D 투자 상위 1400대 기업에 미국 487개, 유럽 400개, 일본 267개 기업이 포진
- 국내 상위 기업의 수와 투자액은 여전히 해외 선진기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나, R&D 투자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나타냄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1), 2011 산업기술백서



< '10년 글로벌 기업 R&D 투자 및 투자 성장률 >

지 표	미국	EU	일본	스위스	한국	중국
기업 수	487	400	267	40	25	19
R&D(백만€)	160,122	132,037	99,085	20,671	13,495	7,632
세계 R&D 비중(%)	35.1	29.0	21.7	4.5	3.0	1.7
전년대비 증감률(%)	10.0	6.1	-9.7	1.7	20.5	29.5
3년 성장률	3.7	3.5	-2.1	4.7	12.9	41.2

주 : 상위 1400대 기업 통계

자료 : EC, 2011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7위), LG전자(49위), 현대자동차(66위)가 100위권 기업에 포함되며, 전기·전자와 자동차 분야에 R&D 투자가 집중됨

< '10년 R&D 투자 상위기업 >

(단위 : 백만€ %)

순위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기업명	R&D 투자액	R&D 집중도 <sup>4)</sup>	기업명	R&D 투자액	R&D 집중도
1	Roche	7,181	18.9	삼성전자	6,181	6.1
2	Pfizer	7,017	13.9	LG전자	2,092	3.2
3	Microsoft	6,741	12.9	현대자동차	1,587	2.1
4	Toyota Motor	6,667	3.8	하이닉스	532	6.7
5	Merck US	6,404	18.7	한국전력공사	440	1.7
6	Volkswagen	6,258	4.9	포스코	371	0.9
7	삼성전자	6,181	6.1	KT	353	2.5

자료 : 상동

- 주요 글로벌 기업은 제약·바이오, 자동차·식품, IT하드웨어·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에 높게 투자하였으며, 특히 제약기업(120개)의 R&D 투자액은 '09년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동아제약(42.1백만€ 약 6백억 원) 등이 제약산업에 R&D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액 기준 글로벌 1위 제약사 Roche(7,180.0백만€ 약 10조 원)의 0.6%에 그쳐, 관련 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

4) R&D 집중도 :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 산업별 주요 글로벌 기업 R&D 투자액 >

(단위 : 백만€ (%))

산업	2009		2010		'09~10 투자액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02,220	(100.0)	463,618	(100.0)	13.4%
제약	66,719	(16.6)	77,820	(17.1)	16.6%
자동차· 부품	62,687	(15.6)	68,572	(15.0)	9.4%
반도체	24,052	(6.0)	28,190	(6.2)	17.2%
통신장비	24,752	(6.2)	27,436	(6.0)	10.8%
소프트웨어	18,478	(4.6)	21,632	(4.7)	17.1%
전자기기	16,736	(4.2)	20,824	(4.6)	24.4%
화학	17,822	(4.4)	20,184	(4.4)	13.3%
우주항공· 우주	14,859	(3.7)	16,153	(3.5)	8.7%
기타(37개 부문)	156,115	(38.8)	182,807	(39.4)	17.1%

주 : 상위 1400대 기업 통계

자료 : 상동

□ 국내 기업의 견조한 R&D 투자 증가세로 인해 한일 양국의 R&D 상위 20대 기업의 투자 실적 격차는 좁혀지고 있음

< 한· | 상위 20대 기업의 R&D 투자 실적 >

(단위: 백만달러)	1999년	2004년	2009년	'99~09 증가율
한국(a)	4,133	8,177	10,861	2.6배
일본(b)	44,283	54,644	64,213	1.4배
b/a(배율)	10.7	6.7	5.9	-

주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해당연도 시장기간 평균환율 적용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일본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

### Ⅲ 국내 R&D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내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실시
  -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
  -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동일한 규모로 투자했을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있음
    - 당기분 방식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하는 방식(대기업 3~ %, 중소기업 25% 적용)
    - 증가분 방식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평균발생액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평균증가액에 대하여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적용)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 및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12년 말 기한으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 '12년 말까지 106개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 및 원천기술<sup>5)</sup>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시 해당 비용의 30%(대기업은 20%)를 세액공제

< 기업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

구분	일반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개발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공제율	당해 발생분 총액의 3~ % 또는 직전 4년 평균 증가액의 40%	당해 발생분 총액의 25% 또는 직전 4년 평균 증가액의 50%	당해 투자액의 20%	당해 투자액의 30%
특징	- 당기분방식 또는 증가분방식 - 일몰 없이 영구화		- 총 29개 분야 106개 기술 대상 - 일반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 공제율 적용 - '12.12.31 일몰 예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별표8

< 조세특례제한법상 R&D 관련 기타 조세지원제도 >

제도명	주요 내용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한도로 손금산입</li> </ul>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제10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이 '12년 말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약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추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연구개발용 자산을 구입하는 때에 익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 말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li> <li>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li> </ul>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li> </ul>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년 말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li> </ul>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11.12.31 이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li> </ul>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산업기술백서

- 산업기술 발전 및 기업의 R&D 투자 확대는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세지원이 유지·대되어야 함
-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R&D 조세지원이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과 직결되어 있음을 실증
  - 기업 R&D 조세 지원액이 100원 증가하면, R&D 투자는 1,113~ 136원 증가<sup>6)</sup>
  - 기업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10%에서 9%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800억 원의 손실이 장기적으로 발생<sup>7)</sup>

6) 한국조세연구원, 2006

7) 하준경, 2012

- OECD 회원국 중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수와 지원 규모 및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냄
    - R&D 조세지원 제도운영(OECD) : 12개국('95) → 18개국('04) → 20개국('10)
    - R&D 세액감면혜택이 미미하던 독일과 핀란드 등도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R&D 세제지원 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이 증가하는 추세
  - 기업 R&D 지원제도 중 조세 지원제도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8)</sup>
- 일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은 R&D 투자 절대금액이 높아 R&D 세액공제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며, 일반기업의 R&D 투자 금액 대비 R&D 세액공제액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기업 R&D 세액공제 결과(국세청) >

(단위 : 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R&D 투자액(a)	187,139	72,861	199,699	81,959	242,129	85,903
(대 : 중소)	(72.0)	(28.0)	(70.9)	(29.1)	(73.8)	(26.2)
R&D 관련 세액공제액*(b)	10,273	6,131	10,370	6,312	11,590	7,781
(대 : 중소)	(62.6)	(37.4)	(62.2)	(37.8)	(59.8)	(40.2)
b/a (투자액 대비 공제액, %)	5.5	8.4	5.2	7.7	4.8	9.1
a/b (투자 효과)	11.9	18.2	19.3	13.0	20.9	11.0

주 : (b)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정부의 R&D 지원은 세액공제형태의 인센티브 형태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 형태로 기술력 등 연구과제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지원해주는 2010년 기준 약 13.7조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되고, 산업체 지원 규모는 2010년 2.8조원 규모로 전체의 약 21% 수준
  - 산업체 지원규모의 약 57%인 1.6조 원이 중소 및 벤처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대기업은 약 43% 수준인 1.2조 원을 수행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 &lt;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주체별 정부지원 규모 &gt;

(단위 : 억 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87,639	95,745	109,936	124,145	136,827
연구소	44,743	46,080	51,751	56,401	62,204
국공립연구소	5,649	5,452	6,225	6,683	7,090
출연연구소	39,094	40,628	45,526	49,718	55,113
대학	19,014	21,978	26,555	30,120	33,956
산업체	15,054	16,071	21,414	28,185	28,684
대기업	5,803	5,923	9,627	13,183	12,330
중소기업	9,250	10,148	11,787	15,002	16,353
정부부처	2,520	4,608	2,603	1,007	3,024
기타	6,309	7,008	7,613	8,433	8,960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 R&D 활동에 대한 기업규모별 정부지원합계(세액공제+직접보조금) 규모는 유사
-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010년에 3,809억 원 가량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의 직접보조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010년 4,023억 원 정도 더 많이 지원받았음
  -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정부지원(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의 합계)금액이 대기업이 약 2000억 원 가량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중소기업이 약 200억 원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IV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 1.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연장

-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주요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계속 지원해야 함
  - 특히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고위험 부문으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해야 함

< 2012년 일몰되는 주요 R&D 조세지원제도 >

제도명		주요 내용
조세 특례 제한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10조)	•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제10조의 2)	• 연구개발 출연금은 당해 연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연도에 소득에 포함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11조)	• 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	•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조의 2)	• R&D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제46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제46조제2항)	• 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

### 2.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 부문 해당 기술 확대

- 전경련 조사 결과,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내용 : 기업의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 활용 사례 및 건의 사항  
 - 대상 : 同 제도를 활용하는 주요 20개 기업의 세무 부서  
 - 방법 : 대면, 서면, 유선  
 - 기간 : '12.3.30 ~ 4.13

- 주요 기업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바탕으로 R&D 투자를 시행해왔으며, 이는 국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 활용 사례 >

**(사례 A)**

同 제도를 활용하여 신성장(그린카, 청정석탄에너지, 기능성나노필름, 태양전지 등), 원천기술(녹색화학공정, 이차전지, 지능형 전력 등) R&D에 적극 투자 중임  
그린카, 이차전지 등 향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 색분야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선제적 진입 및 수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사례 B)**

同 제도를 활용하여 신성장(바이오시밀러), 원천기술(신약 후보물질) R&D에 적극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 그 투자 규모를 더욱 늘려갈 계획임. 또한 바이오시밀러, 신약 등은 신성장동력으로 꼽혀왔던 BT의 대표 분야로써, 同 제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기술 육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사례 C)**

그 동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자사가 아닌 위탁 위주로 진행해 왔었으나, '12.1.1일자부터 신성장· 원천기술 R&D를 위탁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기에 (조특령 별표 6), 향후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전기차,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폐자원 에너지화, 고효율 LED, 친환경금속, 에너지금속, 융복합섬유 등임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7에 따라,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다방면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업데이트가 필요
- 정부 임의의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규정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 대한 활발한 R&D 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을 확대해야 함
  - 예시 : 연료전지(건물용 연료전지 스택/시스템 기술),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마그네슘 제련 기술), 이차전지(리튬 추출 및 기타 자원 자원화 기술), 석유화학 산업의 촉매 원천기술 등



### 3. R&D 세액공제율 조정 · 대

- 특정 기술에 대한 차별적 지원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R&D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를 일반 R&D와 통합 적용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확대할 수도 있음
- R&D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전체연구개발비에 대한 증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기업인의 39.3%는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세액공제율 확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9)</sup>
- R&D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가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음

< 기업 R&D 세액공제 개선(안) >

구분	일반연구 · 력개발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제율	당해 발생분 총액의 10% 또는 직전 4년 평균 증가액의 50%	당해 발생분 총액의 15% 또는 직전 4년 평균 증가액의 55%	당해 발생분 총액의 20% 또는 직전 4년 평균 증가액의 60%

### 4. R&D 친화적 정책인프라 조성

- 정부 R&D 정책의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비일관성, 경직성, 편중성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정권교체 때마다 정부 R&D 정책 및 중점 투자 분야가 변경되어, 일관되고 장기적인 R&D 정책 추진이 어려운 면이 있음
- R&D 연구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관리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 산 · 고 업무 양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R&D 정책 수립 시 산업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9) 산업계 연구인력 1,227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창업 · 처기업의 세제 지원 확대 27.9%, 조세지원제도의 영속적 지원 16.4%, 수입 재료 및 장비의 관세감면 확대 16.4% 순으로 조사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 정부의 R&D 관련 지원제도 및 사업은 매우 폭넓게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 높은 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인력지원 사업의 경우 인력의 수요·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R&D 전문인력을 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처우 및 소재지역 등에서 수요기업과 연구인력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
  - 금융기관의 R&D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기업에게 지원이 안 되는 실정
    - 기술금융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의 체계 구축 및 신뢰성 제고가 시급하며,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완화시키고 기준을 정비해야 함
  - R&D 사업 성실실패 과제에 대한 불이익조치 적용을 배제해야 함
    - 범부처 R&D규정에 성실실패의 개념과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실실패 과제에 대해 적용하는 추가 불이익 조치를 배제해야 함

## 5.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기업 지원 확대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부합하여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 연구보조금, 전문연구요원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녹색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어 기업에게 투자 리스크가 큼
-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녹색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국내 녹색산업은 태동단계로 글로벌 선도 기업이 없으며, 신규 사업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
  -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보조금 지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추가 배정해야 함

## V 결론 및 요약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R&D 투자는 국가의 발전 동력으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투자를 유인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국내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절대적인 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산업기술 발전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는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세지원이 유지· 확대되어야 함
  - 기업 R&D 투자가 국가 R&D의 7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 2012년 말 일몰되는 주요 R&D 조세지원제도의 기한 연장을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계속 지원해야 함
  -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해 R&D 정책의 투자효과를 제고해야 함
  - 기업에 부담을 주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정부는 R&D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더욱 고취시킴으로써,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 참고문헌 >

- 전경련 외(2012),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2), 2012년도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 전경련(2011),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비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1), 2011 산업기술백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1), 일본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 설문조사 결과
- 한국조세연구원(2006),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 European Commission(2011), The 2011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